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81
------	------

2017.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30일, 박진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진형 의원)

1. 제안이유

- 미래혁신기술의 진흥 및 혁신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대상 및 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미래혁신기술 진흥의 법적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추진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적극행정의 면책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된 것임.

나. 미래혁신기술의 정의(제2조)

- 조례안은 미래혁신기술의 정의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조례에서 열거한 분야의 기술과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허공법과 기술을 추가하고 있음.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각목과 관련 법령의 규정>

각목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제6조의2 삭제 <2016.1.6.>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하지만 다 목에서 인용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가 현재 삭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이를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인 안 제2조 제2호 다 목을 삭제하여야 함.

다.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제4조~제8조)

- 본 조례안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기구로 혁신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중 안 제4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에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4.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기획·평가·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5.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과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에서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이 해당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함.
- 또한 혁신성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된 사람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성장위원회 소관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실무적 자문 등을 위하여 혁신성장위원회에 ‘미래전략분과위원회’와 ‘산학연정책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혁신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이 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 역시 동급의 위원들로 구성된다면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혁신성장위원회가 담당하는 자문·심의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미래기술훈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외에도 실증사업 대상자의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안 제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고 법문언적 표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함.

현재 조례안	수정의견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p>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p>	<p>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p> <p>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p> <p>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라.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제9조~제11조)

-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성 점검과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실증사업의 대상은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서비스’,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제품·서비스’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실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성장위원회는 분기별로 제안된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혁신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 적정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증사업의 대상이 개발이 완료되거나 출시된 상품과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어 실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은 2018년도 예산에 현재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5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존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투자심사, 민간위탁 동의 등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며 향후에도 사업의 추진성과 등의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 혁신기술 경진대회 (제12조~제13조)

-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을 목적으로 혁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외국인 및 국내·외 대학과 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 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시장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행위와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서 표창·포상의 경우에도 상금의 수여를 제외하고 있어 안 제13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바. 적극행정의 면책(제14조)

- 안 제14조는 실증사업과 경진대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에서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자체감사에 대한 적극적 면책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안 제14조는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

- 다만 적극행정의 면책규정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법해석의 모호성 등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마. 종합의견

-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혁신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산업 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들이 인용규정의 부존재,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사유로 해당 조문의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됨.
 - 제2조 제2호 다 목은 인용규정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가 부존재하므로 삭제하여야 함.
 - 제8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참고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제13조 제2항의 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삭제하여야 함.

- 또한 혁신성장위원회의 상징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서울시장이 공동 위원장이고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기능이 많아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성이 우려됨.
 - 혁신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외에도 공공 실증사업의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성과의 공개·공유에 대한 심의 등 실무적인 기능이 함께 부여되어 있음.
- 특히 혁신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방대한 반면 혁신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특성상 신속한 회의 개최 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조례안과 함께 회부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3호, 박진형 의원 대표발의)과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4호, 박진형 의원 대표발의)은 본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의 심사시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81
----------	---------

제안년월일 : 2017년 11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용규정이 부존재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안의 체계적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미래혁신기술에서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 기술’를 삭제함(안 제2조 제2호).
-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수정함(안 제8조)
- 다. 경진대회에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의 연구개발 또는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상금 지급을 삭제함(안 제13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부터 바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우수 아이디어 지원) 시장은 제12조의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례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p> <p>가.~ 나.(생략)</p> <p><u>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u></p> <p><u>라. ~ 바. (생략)</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p> <p>가.~ 나.(생략)</p> <p><u><삭제></u></p> <p><u>다. ~ 마. (생략)</u></p>
<p>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u>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u>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u></p>	<p>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u>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u></p> <p><u>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u></p>

	<p><u>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3. <u>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p> <p>4. <u>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5. <u>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6.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13조(우수 아이디어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의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u>시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의 연구개발 또는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별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3조(우수 아이디어 지원) 시장은 제12조의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협력체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 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2.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에서 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

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시가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의 진흥 및 혁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4.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실증사업의 기획·평가·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5.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혁신기술진흥 소관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 시, 소관 실·본부·국 및 산하기관 중 해당 안전의 소관기관(부서)의 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⑥ 위원장 및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전략분과위원회와 산학연정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전략분과위원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혁신기술 진흥 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2. 산학연정책분과위원회 : 미래혁신기술 개발·상용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미래혁신기술 공공실증 사업,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자문·심의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① 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3.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제품·서비스

② 시장은 미래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실증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실증단지 지정·조성 등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실증사업 내용을 우선 정하여 공고하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중에서 적정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 공유할 수 있다.

② 실증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혁신기술 경진대회)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아이디어 지원) 시장은 제12조의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의 면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